「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의 시험 운영 기간 연장과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 연장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및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영'),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위탁',
'수탁'→ '운영'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 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 3. 운영기관의 업무
 -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다. 제2조(운영의 위탁) 시행령 제14조제5항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시행령」 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종가로 345 3.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3. 운영기관의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4. 위탁기간 : 2021. 5. 1. ~ 2024. 4. 30.(3년)

-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100% 환불
-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